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김정호·김성환·민홍철

박 정・신영대・어기구

이훈기 • 전재수 • 정성호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,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·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.

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.

이에 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 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(이하 "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"라고 함)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,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,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고 함)를 설치함(안 제5조).
- 라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·재 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마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되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거나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- 사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도록 함(안 제15조).
- 아.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

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2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,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 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법은 제4조에 따른 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 단체(이하 "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만 적용 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특별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의 권한으로 한 경우(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·원칙·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) ① 부산광역시 • 울산광역시 및

경상남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 체를 설치한다.

- ②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을 합한 구역으로 한다.
- ③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.
- 제5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) ① 부울경특별지방자 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
 - 2.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 - 3. 제9조에 따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국가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제9조에 따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하고,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특별지방자치단체장, 부산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상남도지사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별지 방자치단체장이 부산광역시장·울산광역시장·경상남도지사와 협의 하여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 치법」 제2조에 따른 시·군·구를 말한다)의 장
- 2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지방의회의원
- 3.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협의회의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협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협의회의 회의)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(半期)에 1회 개최 한다.
 -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협의지원단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지원단을 둔다.
 - ② 협의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상·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와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울 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) 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2조의 규약(이하 "규약"이라 한다)에 따른 부울 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무

- 나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무
- 다. 광역교통 및 물류망 구성
- 2.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
 - 가. 신산업 육성 계획 및 산업별 발전 전략 마련
 - 나. 첨단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반 시설 설립
 - 다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조성과 탄소 중립에 관한 사무
- 3.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
 - 가. 산업 및 분야별 인재 양성 여건 조성 및 시설 설립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공립학교 설립
-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위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제10조(주민투표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·발의자·발의요건,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주민투표법」에서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주민투표에 관하여 정한 내용에 따르되, 주민투표사무는 부산 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.

- 제11조(주민소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21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장 및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·청구요건·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지역선거구시·도의회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정한 내용에 따르되, 주민소환투표사무는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.
- 제12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설립 등)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「지 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.
- 제13조(공공기관의 이전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별 배분, 이전 대상 지역 등에 관하여 특별 자치단체장 및 부산광역시장・울산광역시장・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경비의 부담) 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의 인구,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가 각각 분담한다.

- ② 국가나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5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·운용) 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(이하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 · 운용한다.
 -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회계를 관리·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6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·부대시설 및 그 부지(공공기관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)의 매각대금, 사용료, 임차보증금 회수 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
 - 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3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 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 - 4. 제18조에 따른 차입금
 - 5. 그 밖의 수입금

-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입지할 공공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·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- 2. 제18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
- 4. 그 밖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
- 제17조(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)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,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- 제18조(차입금) ① 특별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수 있다.
 -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.

- 제20조(세출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21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- 제22조(재정 특례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교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교육기관 관련 사무 에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 부장관은 해당 교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.
- 제23조(국가의 재정지원) ①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이전에 부산광역시, 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.
 - ②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.
- 제24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설치 등) ① 특별지방자치

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재원 등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 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.
- 제25조(조세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 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위원회의 설치)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 체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 및 경상남도지사가 각각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

서 추천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.

-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추진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지체 없이 그 사 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